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1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김미애 · 안상훈 · 이주영
최수진 · 김재섭 · 주호영
서명옥 · 백종현 · 조승환
안철수 · 배현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 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 · 금융 · 경제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시 해당 분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 · 금융 · 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

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 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를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자립을 위한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u>주거 · 생활 ·</u> <u>교육 · 취업 · 의료</u> 등의 지원 1의2. (생 략) <u><신 설></u>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 1. ----- <u>법률 · 금융 ·</u> <u>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u> <u>생활 및 의료-----</u>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u>자립을 위한 진로 · 직업</u> <u>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u> <u>개최 등 취업 지원</u>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